

[2018. 9. 14.] [29148 , 2018. 9. 11.,]

1 ()

1 2()

2 ()

3

4

5

6

7

8

9

10 ()

11 ()

12 ()

13 (.)

14

15 ()

16 ()

16 2(가)

17 ()

17 2

17 3()

17 4()

17 5(가)

17 6()

17 7()

17 8(가)

17 9(.)

18 ()

18 2()

19 ()

20 ()

21

22 ()



[2018. 9. 14.] [29148 , 2018. 9. 11.,]

() 044 - 202 - 3399

1 () 「 」 .
[2009. 7. 7.]

1 2() 「 」 (" ") 2 5 6
(" ") . < 2010. 3. 15., 2016. 6. 21.>

1. : 37 2 500
37 가
2. : .

가. 가
. 가
.

[2009. 7. 7.]

2 () 5 1
. < 2010. 3. 15., 2018. 3. 6.>

1. .
- 2.
3. .
- 4.

[2009. 7. 7.]

[2018. 3. 6.]

3 <2016. 6. 21.>

4 <2016. 6. 21.>

5 <2016. 6. 21.>

6 <2016. 6. 21.>

7 <2016. 6. 21.>

8 <2016. 6. 21.>

9 <2016. 6. 21.>

10 () 7 1 가가 (" ") 7
)
1 11 1 . < 2010. 3. 15.>

7 1 가 (" ")

「 10 8 .< 2015.

11. 18.>

[2009. 7. 7.]

11 () 7 1 1 5 1
2 .

1.

2.

3.

4.

5. (病歷)

6.

1 1 2 .< 2010. 3. 15.>

[2009. 7. 7.]

12 () 10 1 가
7 1 11 2

.< 2010. 3. 15.>

1

[2009. 7. 7.]

13 (.) . .
(.) . 10 1
. < 2010. 3. 15., 2010. 12. 29., 2015. 7. 24., 2016. 6. 21.>

1.

(産前) . (産後)

2.

3.

4.

「 」 24 1

1

.< 2010. 3. 15.>

[2009. 7. 7.]

14 <2009. 7. 7.>

15 () 14 24

14 1 1

14 1 2

[2009. 7. 7.]

16 () 15 5 1
 . < 2016. 6. 21.>
 1. 15 1 (" ")
 2.
 1 1 .< 2015. 7. 24., 2016. 12. 30.>
 1. 「 」 「 」 1 2
 . , 2 1
 2. , , ()
 15 5 1
 .< 2016. 6. 21.>
 1.
 2. ()
 가. 「 」 2
 . 「 」 80
 3 .< 2016. 6. 21.>
 1. : 1
 2. : 2
 [2009. 7. 7.]
 [2016. 6. 21.]

16 2(가) 15 5 2
 가 .
 1. 「 」 2
 2. 1
 가. 가
 .
 .
 . (化膿性)
 15 5 2
 1 1
 .
 1 2
 .

[2015. 7. 24.]

17 () 15 9 1 2 1 .
 [2006. 6. 7.]

17 2 <2009. 7. 7.>

17 3() 15 11 1
1 2
·
·
·
1 2 1 가 , 가
3 .< 2015. 7. 24.>
[2009. 7. 7.]

17 4() · · 15
11
· < 2015. 7. 24.>
1 20 ·
· ·
가 7 .< 2015. 7.
24.>
2 ·
· · .< 2015. 7. 24.>
·
·< 2010. 3. 15.>
[2009. 7. 7.]

17 5(가) 15 15 2 가 가 ()
" ")
1. : 15 15 1 ,
2. 가
가. 가 : 1 1 · ,
2 2
· 가 : 1 2
· 가
(" ")가 : 1
1
1 2 가
·
1. 가 : 1 1
2 가
2. 가 : 1 1 2
3. 1 2 가 가 : 1 1
2 가
[2015. 7. 24.]

17 6() 15 17 1 ·
· ·
2 2 ·

[2016. 6. 21.]

17 7() . .
 「 가 15 18 1 」 2 2 (" ")
 . 「 9 15 . 「 2 4
 가 「 」 2 11
 100 120 가 . . .

[2016. 6. 21.]

17 8(가) 15 19 2 가
 1. 16
 2. 가
 1 가

[2016. 6. 21.]

17 9(.) 15 20 1 (" ")
 1. , , ,
 2.
 3. ,
 4.
 5.
 . 가

[2016. 6. 21.]

18 () 16 1 (" ")
 1.
 2.
 3.
 4.
 5.
 6.
 7. ,
 8.
 9.

- 10.
- 11.
- [[2009. 7. 7.](#)]
- 18 2() 23 1 " "
1. 「 」
- 2.
3. ,
4. ,
- • 23 1
- 6
- (가
-)
- • 23 1
- 1 3
- [[2018. 9. 11.](#)]
- 19 () 가, (•
-), 「 」 「 」
- 가 「 」 23 ,
- 18 2 , 19 1 4
- 가 . < [2016. 6. 21.](#), [2016. 12. 30.](#) >
1. 8
2. 10 • •
3. 11
4. 15
- 4 2. 15 2
5. 15 10 •
6. 15 19 가
7. 15 20
- [[2012. 1. 6.](#)]
- 20 () 25 2 15 6
1. 16
2. •
- 1
- [[2016. 6. 21.](#)]
- 21 <[1999. 5. 21.](#)>

22 () 27 1 2 3 .
[2009. 7. 7.]

< 12046 ,1986. 12. 31.>

< 12773 ,1989. 8. 7.> ()

1 () .

2

3 ()

14 " " " .

⑰

< 14446 ,1994. 12. 23.> ()

1 () . < >

2

3 () <112>

<113> .

2 , 3 3 , 6 1 , 7 , 10 1 , 11 3 , 12 1 , 13 1 4 , 14 ,
16 2 , 17 1 • 2 , 20 , 21 22 2 • 3 " " "
" , 3 2 " " " , 13 2 , 14 , 16
2 , 17 1 4 , 19 4 22 4 " " " "

<114> <140>

< 16315 ,1999. 5. 21.>

< 18312 ,2004. 3. 17.> (가)

< 19502 ,2006. 6. 7.>

() 2006 6 8 .

()

< 20679 ,2008. 2. 29.>(가)

1 () .

2 8

9 () ②④

②⑤ .

1 2 2 , 2 , 3 3 , 6 1 , 7 , 10 1 ,

11 3 , 12 1 , 13 1 4 , 14 , 22 2 3 " "

" 가 " .

3 2 " " 가 " .

13 2 , 14 , 17 4 5 22 4 " " " 가 "

.

②⑥ <80>

< 21618 ,2009. 7. 7.>

2009 7 8 .

< 22075 ,2010. 3. 15.>()

1 () 2010 3 19 . < >

2 2 () <63>

<64> .

1 2 2 , 2 , 3 3 , 6 1 , 7 , 10 1 ,

11 3 , 12 1 13 1 4 " 가 " " "

3 2 " 가 " " " .

13 2 17 4 5 " 가 " " "

<65> <187>

< 22564 ,2010. 12. 29.>()

1 () 2010 12 30 . < >

2 6

7 ()

.

13 1 4 " 「 」 11 1 " " 「 」 24

1 " .

16 2 1 , 2 " " " " .
2. 「 」 2

㉨

8

< 23488 ,2012. 1. 6.> ()

1 () . < >
2

< 26446 ,2015. 7. 24.>

1 () 2015 7 29 .
2 () 1
16 2 1

< 26651 ,2015. 11. 18.> ()

1 () 2015 11 19 .
2 ()

10 2 " 「 」 7 7 " " 「 」 10
8 " .

3

< 27239 ,2016. 6. 21.>

1 () 2016 6 23 .
2 () 16 3
16 4 2 2

3 () .
2 2 1 가

2 「 」 26
2 2 1 가

< 27729 ,2016. 12. 30.>

1 ()

2 () 16 1 1

16 2

3 () 2 2

< 28695 ,2018. 3. 6.>

1 () 2018 3 13 , 2 2 2018 6 13

2 ()

2 2 " 가 " " "

< 29148 ,2018. 9. 11.>

2018 9 14

[별표 1] <개정 2016. 12. 30.>

행정처분기준(제1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정지처분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하되,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처분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이행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기준의 1차란 처음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의 처분을 말하고, 2차 이후의 처분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의 처분을 말한다.

라. 행정처분권자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기준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 1) 산후조리업 업무정지의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 2) 산후조리원 폐쇄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제2호나목1) 및 같은 목 4)부터 6)까지는 4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으로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사목 및 아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관 련 법 규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5조에 따른 인력과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법 제15조의8제1호 및 제15조의9제1항			
1)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을 갖추지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폐쇄명령

아니한 경우 2)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폐쇄명령
나. 법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종사하게 한 경우	법 제15조의8제2호 및 제15조의9제1항			
1) 18세 미만인 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4개월	폐쇄명령
2) 정신질환자		업무정지 2개월	폐쇄명령	폐쇄명령
3) 마약류 중독자		업무정지 2개월	폐쇄명령	폐쇄명령
4)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4개월	폐쇄명령
5)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4개월	폐쇄명령
6) 산후조리원의 폐쇄명령(법 제15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4개월	폐쇄명령
다. 산후조리업자가 법 제1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 제15조의2제7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변경하는	법 제15조의9제2항 제2호	폐쇄명령	폐쇄명령	폐쇄명령

경우는 제외한다.				
라. 법 제15조의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15조의8제3호 및 제15조의9제1항			
1) 건강기록부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임신부와 영유아의 건강 상태를 기록·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폐쇄명령
2)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폐쇄명령	폐쇄명령
3) 임신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또는 화재·누전 등의 안전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폐쇄명령	폐쇄명령
마. 법 제15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등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종사하게 한 경우	법 제15조의8제4호 및 제15조의9제1항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폐쇄명령
바. 법 제15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종사하게 한 경우	법 제15조의8제4호 및 제15조의9제1항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폐쇄명령
사. 법 제15조의9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정지명령을 받고 그 정지기간	법 제15조의9제2항 제1호	폐쇄명령	폐쇄명령	폐쇄명령

중에 산후조리업을 계속 한 경우				
아. 법 제15조의14제1항을 위반하여 “산후조리원”이 라는 글자를 사용하지 아 니한 경우	법 제15조의8제5호 및 제15조의9제1항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폐쇄명령
자. 법 제15조의15제2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 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15조의8제6호 및 제15조의9제1항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폐쇄명령

[별표 2] <개정 2016. 12. 30.>

과징금 산정기준(제17조의3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 나.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업무정지 기간에 라목에 따라 산출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 다. 나목의 업무정지 기간은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기간(감경을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감경된 기간을 말한다)을 말한다.
- 라.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의 연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제2호의 표에 따라 산출한다.
- 마. 연간 총매출금액은 해당 업소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하거나 조정한다.
- 바. 나목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으로 한다.

2. 과징금 부과기준

등급	전년도 연간 총매출금액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1	3천만원 미만	7,000원
2	3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18,600원
3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34,900원
4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46,000원
5	2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52,000원
6	3억원 이상 ~ 4억원 미만	58,000원
7	4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64,000원
8	5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70,000원
9	6억원 이상 ~ 7억원 미만	76,000원
10	7억원 이상 ~ 8억원 미만	86,000원

11	8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97,000원
12	9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109,000원
13	10억원 이상 ~ 11억원 미만	120,000원
14	11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32,000원
15	12억원 이상 ~ 13억원 미만	143,000원
16	13억원 이상 ~ 14억원 미만	153,000원
17	14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66,000원
18	15억원 이상 ~ 16억원 미만	178,000원
19	16억원 이상 ~ 17억원 미만	189,000원
20	17억원 이상 ~ 18억원 미만	201,000원
21	18억원 이상 ~ 19억원 미만	212,800원
22	19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224,000원
23	20억원 이상	230,000원

[별표 2의2] <개정 2018. 3. 6.>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의 설치기준 등(제17조의6 관련)

1. 설치기준

- 가. 임산부실은 2층 이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 침대, 영유아 목욕설비 등 임산부와 영유아가 함께 생활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모자동실(母子同室)의 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
- 나. 영유아실은 2층 이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실 정원은 임산부실 정원의 100분의 30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다. 그 밖에 산후조리원의 인력 및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운영기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후조리원을 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감염 및 안전관리

- 1)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임산부와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의 감염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 가) 감염 예방, 감염 발생 시 대응, 교육·훈련 등이 포함된 감염관리계획 수립
 - 나) 산후조리원 내 감염 전파의 위험요인에 대한 점검·평가 및 개선활동
 - 다) 산후조리원 종사자에 대하여 감염 발생 상황별 조치요령에 관한 교육·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

- 2)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임산부와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의 안전관리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 가) 화재 예방, 화재 발생 시 대응, 안전교육·훈련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 계획 수립
- 나) 소화시설, 대피로, 비상구 등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평가 및 개선활동
- 다) 산후조리원 종사자와 임산부에 대하여 화재발생 시의 대응 및 행동요령에 관한 교육·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

나. 모자동실 운영 등

- 1) 임산부실은 임산부와 영유아가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모자동실의 형태로 운영하여야 한다.
- 2) 산후조리원 입소 전 임산부에게 임산부실을 모자동실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미리 알리고, 모자동실 사용에 대한 준수사항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3) 영유아실은 신규로 입원하는 영유아의 감염 여부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용도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의 우선이용

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후조리원 이용자에게 이용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산후조리원을 우선이용하게 하거나,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지원 범위에서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급여 또는 사회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바)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자)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라. 행정적·재정적 지원

조례·규칙의 제정, 관할 보건소·의료기관과의 연계 등 산후조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마. 실태조사 및 평가

산후조리원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후조리원에 대한 실태조사와 평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산후조리원 폐쇄 및 중단에 따른 사후관리 등

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설치한 산후조리원을 폐쇄하거나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입소 중인 임산부와 영유아가 다른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산후조리원의 설치기준 또는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산후조리원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별표 3] <개정 2018. 9. 1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가.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신부의 사망·사산 또는 신생아의 사망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제2항제1호	100
나. 법 제15조의4제1호를 위반한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1호	200
다. 법 제15조의4제4호를 위반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1호 의2	200
라. 법 제15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등을 받지 않은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등을 받지 않은 사람을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도록 한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2호	170
마. 법 제15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3호	150
바. 법 제15조의7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공무원의 출입·검	법 제27조제1항제4호	200

사 또는 열람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사. 법 제15조의10을 위반하여 산후조리업의 폐업·휴업 또는 재개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제2항제3호	70
아. 법 제15조의14에 따른 명칭 사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조제2항제4호	50
자. 법 제15조의15를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제2항제5호	100
차. 법 제15조의16에 따른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 체계 및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게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5호	200
카. 법 제20조를 위반하여 인구보건복지협회와 같은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27조제2항제6호	50